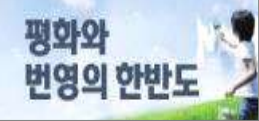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3쪽(붙임 2쪽 포함)		
배포일시	2020. 12. 14.(월)	담당부서	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			
담당과장	서한교 (02-901-7160)	담당자	이정희 (02-901-7162)			

## 통일교육원,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

-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·통일 교육 협력 -

□ 통일부 통일교육원(원장 백준기)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(한국사무소 대표 크리스티안 타스)과 2020. 12. 14.(월)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.

\*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

○ 나우만 재단은 그간 대북 협력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, 북한에 대한 연구, 독일의 통일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

\* △1958년 설립된 독일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△1987년 한국사무소 개소 △2003년부터 환경개발·수자원 관리 등을 주제로 북한 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실시

□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평화·통일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○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, 세미나, 지식공유 플랫폼 활용, 연구자료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평화·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의 외연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※ 붙임 업무협약서 1부. 끝.

〈 불 임 〉

## 「통일교육원-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」 상호협력 업무협약서

통일교육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양한 지식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·안정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.

양 기관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평화·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,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【협력 원칙】

양 기관은 상호 존중, 상호 이익, 동등한 논의 원칙에 기반하여 통일에 대한 지식교류를 위한 상호협력의 기초를 확립한다.

### 제 2 조 【협력 분야】

양 기관은 각 기관이 추구하는 원칙과 필요에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, 프로젝트, 활동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.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.

#### 2.1. 공동 프로젝트

양 기관은 기관의 중점분야에서의 역량 개발·훈련 프로그램, 회의·세미나, 지식공유 플랫폼, 방문 학습, 연구 자료 및 기타 교육활동, 또는 유용한 네트워크 활동 등을 공동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, 세부 협력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.

#### 2.2. 홍보

양 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의 활동 및 행사를 홍보하고 초청하는 것을 상호 허가하고 장려함으로써 각 기관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및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

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# 2.3. 로고

공동주관임을 명시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로의 웹사이트와 출판물에 상대 기관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.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용 외에 상대기관의 기관명이나 로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불합리하게 승인을 보류하지 않는다.

## 제 3 조 【의무】

- 3.1.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비밀보장을 확인하고 서면 허가 없이 관련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.
- 3.2. 본 업무협약서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과 의견 차이는 양 기관 사이의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## 제 4 조 【협약 기간】

- 4.1. 본 업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2021년 말까지 1년간 유지된다.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 기간은 양 당사자에 의해 종료 3개월전까지 종료합의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,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.
- 4.2. 이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.

본 업무협약서의 당사자인 양 기관은 본 계약서의 영문과 국문본을 각 2부씩 작성 및 집행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월 14일

통일 교육원  
원장 백준기

---

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
한국사무소대표  
크리스티안 탁스

---